【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3.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진명해피케어신세계지점 사무실 053)956-8848, 팩스 053)956-8849

☎ 시설장 박해연 010-3530-0531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29, (신천동. 대경빌딩 6층)

■ 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주) 진명해피케어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나. 기능회복서비스
다. 상담서비스
라. 보건의료서비스
마. 병원동행서비스
바. 위생청결서비스
사. 인지기능프로그램
아. 신체기능프로그램
자. 사회적응지원서비스
차. 심리정서서비스
카. 특화프로그램
타. 어르신교육지원

■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시설급여는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 당 시간	2024년 수가(2.92%)	2024년 본인부담(15%)	2024년 본인부담(9%)	2024년 본인부담(6%)
30분	16,630	2,495	1,496	997
60분	24,120	3,618	2,170	1,447
90분	32,510	4,877	2,925	1,950
120분	41,380	6,207	3,724	2,482
150분	48,250	7,238	4,342	2,895
180분	54,320	8,148	4,888	3,259
210분	60,530	9,080	5,447	3,631
240분	66,770	10,016	6,009	4,006

○ 주야간보호 1회당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2024년수가 (2,92%인상)	공휴일 (30%)	평일(월~토요일)		공휴일	
				공단	본인부담	공단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9,810	51,753	33,839	5,971	43,991	7,762
	2등급	36,850	47,905	31,323	5,527	40,720	7,185
	3등급	34,020	44,226	28,917	5,103	37,593	6,633
	4등급	32,470	42,211	27,600	4,870	35,880	6,331
	5등급	30,920	40,196	26,282	4,638	34,167	6,029
	인지	30,920	40,196	26,282	4,638	34,167	6,029
6시간 이상	1등급	53,360	69,368	45,356	8,004	58,963	10,405
	2등급	49,420	64,246	42,007	7,413	54,610	9,636
	3등급	45,620	59,306	38,777	6,843	50,411	8,895
	4등급	44,070	57,291	37,460	6,610	48,698	8,593
	5등급	42,500	55,250	36,125	6,375	46,963	8,287
	인지	42,500	55,250	36,125	6,375	46,963	8,287
8시간 이상	1등급	66,360	86,268	56,406	9,954	73,328	12,940
	2등급	61,480	79,924	52,258	9,222	67,936	11,988
	3등급	56,760	73,788	48,246	8,514	62,720	11,068
	4등급	55,210	71,773	46,929	8,281	61,008	10,765
	5등급	53,640	69,732	45,594	8,046	59,273	10,459
	인지	53,640	69,732	45,594	8,046	59,273	10,459
10시간 이상	1등급	73,110	95,043	62,144	10,966	80,787	14,256
	2등급	67,720	88,036	57,562	10,158	74,831	13,205
	3등급	62,570	81,341	53,185	9,385	69,140	12,201
	4등급	61,000	79,300	51,850	9,150	67,405	11,895
	5등급	59,450	77,285	50,533	8,917	65,693	11,592
	인지	53,640	69,732	45,594	8,046	59,273	10,459
13시간 초과	1등급	78,400	101,920	66,640	11,760	86,632	15,288
	2등급	72,630	94,419	61,736	10,894	80,257	14,162
	3등급	67,100	87,230	57,035	10,065	74,146	13,084
	4등급	65,540	85,202	55,709	9,831	72,422	12,780
	5등급	63,990	83,187	54,392	9,598	70,709	12,478
	인지	53,640	69,732	45,594	8,046	59,273	10,459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월 한도액 (120%)		2,069,900 (2,483,880)	1,869,600 (2,243,520)	1,455,800 (1,746,960)	1,341,800 (1,610,160)	1,151,600 (1,381,920)	643,700
본인 부담금	일반(15%)	263,200	243,790	225,250	219,600	193,100	96,550
	감경(9%)	157,920	146,280	135,150	131,760	115,860	57,930
	감경(6%)	105,280	97,520	90,100	87,840	77,240	34,000

○ 상단의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이 산정되며 동 규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2023.01.01.)

(단위 : 원)

비급여 항목			주·야간보호 비용 (주식 : 1일 2식 / 간식 : 1일 1식)		
해당여부	Y	N	1(식)	산출기초	22일 기준
식재료비	○		2,600	2,600×22일×2식	114,400
간식비용	○		400	400×22일×2식	17,600
이·미용비		○	-	-	-
상급침실비용		○	-	-	-
※ 상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물가변동 및 기관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다.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신원 인수방법** 신원인수는 이용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야간보호)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야간보호)

6.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야간보호)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야간보호)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야간보호)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주야간보호)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 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6.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7.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8.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다.

9.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